

창업세무



Contents

1. 세금의 기초
2. 사업자등록
3. 부가가치세
4. 소득세
5. 원천징수납부요령

세금의 기초

1) 세금의 개념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금전급부를 말함.

2) 사업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와 개요

(1)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국세	부가가치세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부과
	소득세	개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
	법인세	법인(주식회사 등)이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
	기타	양도소득세, 특별소비세, 상속·증여세 등
지방세	취득세	각종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경우에 부과
	등록세	각종 재산권 등을 등기·등록한 경우에 부과
	기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2)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사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제외사항(면세사업자에 해당함)

- ① 곡물, 과일, 채소, 육류, 생선 등 미가공 식료품의 판매
- ② 수돗물, 연탄, 무연탄, 담배, 복권 등의 판매
- ③ 도서, 신문, 잡지, 방송(광고 제외) 등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의 제공
- ④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의 제공
- ⑤ 허가 받은 학원·강습소·교습소 등의 교육용역 제공
- ⑥ 토지의 판매

(3) 사업자와 소득세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 즉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① 모든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 ②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내야 함.

(4) 사업자와 특별소비세

(5) 기본적인 세금의 용어 정리

- ① 납세의무자
- ② 과세기간
- ③ 소멸시효
- ④ 신고·납부기한
- ⑤ 가산세
- ⑥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 ⑦ 불복청구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신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함.

구비서류

-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또는 국세청(www.nts.go.kr)자료실에서 다운가능)
- ② 개인의 경우는 본인 주민등록증 지참,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③ 사업허가증 사본 1부 (약국, 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 ④ 법인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첨부
-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본인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 ⑥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업계약서 등)

2) 사업자의 구분

사업자는 크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됨.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 없고 소득세만 부담하게 됨.

(1) 과세와 면세의 구분

- ① 과세사업자 : 음식업 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담)
- ② 면세사업자 : 농 · 축 · 수산물 판매자 등 (소득세만 부담)

(2)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기준

과세사업자는 전년도 1년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48백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에 해당되고, 48백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됨.

(3) 신규사업자의 경우

- 간이과세배제업종

- 건설업, 음식업(간이음식점 제외), 숙박업(하숙업 및 여인숙업 제외), 통신업, 지역과 업종규모 등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 적용배제기준에 해당하는 때
- 광업, 제조업(과자점, 방앗간과 제분업, 양복, 양화점, 기타 전체매출액의 50%)
- 도매업(도·소매업 겸업 시는 소매업도 과세특례적용을 배제)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 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 지역에 한함)
 - 부동산매매업
- 특별시 및 광역시 내의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구분의 차이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구조 및 세금부담 면에서 차이발생

구분	산출세액구조
일반과세자	매출액×10% - 매입세액, 공제세액
간이과세자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20~40%)×10% - 공제세액

(5) 사업자 등록 시 유의사항

- ① 먼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잘 판단하여 신청하여야 함.
- ② 개인사업자인 경우, 업종선택 시 업종별코드번호를 반드시 확인함
(이는 향후 소득세 결정 시 세금부담에 영향을 주게 됨).
- ③ 유흥음식업소, 식품잡화점 등 주류 판매를 해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주류 판매 사실을 기재 받게 되면 별도의 주류 판매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④ 필요 시에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이 가능함.
당장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정보통신사업 등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함.
- ⑤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⑥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되므로 자료상과의 거래, 체납 등은 누적관리를 받게 됨.
- ⑦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됨

(6)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 ① 신고기간의 총매출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됨.
- 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함.
- ③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7) 사업자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길 때의 정정신고

- ①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 상호,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때
 - ㉡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되는 때
 - ㉣ 법인의 대표자 변경 시(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을 먼저 변경하여야 함)

- ②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특징

(1)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

(2) 부가가치세의 특징

①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내는 세금

즉, $\text{매출액} - \text{매입액} = \text{이윤}$ 에 대하여 10%의 계산되어지는 구조임.

②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소비자)이 부담하는 세금

③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함.

④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단위로 하여 과세함.

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함.

⑥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관할세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가 됨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연간매출액	4천8백만 원 이상	4천8백만 원 미만
세액계산	매출액의 10% - 매입액의 10%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년에 2번 신고납부, 법인은 4번 신고 납부하게 됨. ②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년에 2번은 확정신고납부 ② 2번의 예정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결정고지
기장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함. ② 매입·매출장 등 장부 기장의무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2005년 부터는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일반과세 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하나라도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4,800만 원 미만이어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3) 일반과세자

(1) 과세기간

- ① 1기 과세기간 : 1. 1~ 6. 30
- ② 2기 과세기간 : 7. 1~ 12. 31

(2) 신고방법

구분	제1기		제2기	
	신고내용	신고기간	신고내용	신고기간
예정 신고	1. 1~3. 31 간의 사업실적	4. 1~4. 25	7. 1~9. 30 간의 사업실적	10. 1~10. 25
확정 신고	4. 1~6. 30 간의 사업실적	7. 1~7. 25	10. 1~12. 31 간의 사업실적	다음해 1. 1~1. 25

(3)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일반과세자)

(4)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요령

(5)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

4) 간이과세자

(1) 신고방법

구분	신고내용	신고기간	신고 시 첨부서류
제1기	1. 1~6. 30 간의사업실적	7. 1~7.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2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 영세율 첨부서류
제2기	7. 1~12. 31 간의사업실적	다음해 1. 1~1. 25	

(2) 예정고지서 발부내용

구분	고지서발부기간	납부기간	신고시 첨부서류
제1기	4. 1~4. 10	4. 1~4. 25	전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
제2기	10. 1~10. 10	10. 1~10. 25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

(3) 간이과세자의 신고요령과 유의사항

(4)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년도	2009년	2010년 이후
	소매업	15%	15%
제조업, 전기가스 · 수도업, 재생재료수집 · 판매업	20%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농 · 수 · 임 · 어업, 기타서비스업	30%	30%	
음식 · 숙박업	30%	30%	
운수 · 창고업 및 통신업	40%	40%	

5)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6)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

7) 의제매입세액공제

(1)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2) 농민에게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제출서류

8) 부가가치세 환급

(1) 부가가치세 환급

(2) 일반환급과 조기환급

① 일반환급

② 조기환급

9) 부가가치세서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소득세

1) 소득세의 개념과 특징

- 소득세는 개인이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

2) 소득세 계산구조

(1) 소득의 계산

- ① 장부를 작성한 경우
- ②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세액의 계산

3)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

4)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할 사업자

- (1) 간편장부 사업자
- (2)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 (3) 간편장부 무기장 시 불이익

5) 간편장부의 작성요령

- (1) 간편장부의 개념
- (2) 간편장부의 작성요령
- (3) 필요경비의 구별

6) 소득세 절세방안

7) 증빙의 종류

원천징수 납부요령

1) 원천징수의 개념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함)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 (소득의 귀속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

2) 갑종근로소득

- (1) 일용근로자
- (2) 일반 월급여자

3) 갑종퇴직소득

(1) 퇴직소득의 범위

(2)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계산

$$\left[\frac{\text{총퇴직금} - \text{각종공제}}{\text{근속연수}} \times \text{기본세율} \right] \times \text{근속연수}$$

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세법에 나열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인적용역, 판매수당 등)을 지급할 때에는 3%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text{사업소득 총지급액} \times 3\% = \text{납부할 원천징수 세액}$$

5) 상금,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6) 반기별 납부제도

- (1) 개념
- (2) 반기별 납부 대상자
- (3) 신청기간
- (4) 반기별 납부방법

7) 원천징수신고납부기한

-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8) 지급조서제출기한

9) 주민세의 납부